

의안번호	2217704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6. 4. 28.
추계번호	26C1649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범죄피해확산 방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이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과의 정보·자료 공유 등 수사협조체계 구축·운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지원 시설의 연계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참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47조의3)

- 개정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신고센터 운영 비용 추계를 위하여는 신고 예상 건수 등에 따른 필요 인력 산출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신고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이 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과장 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